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4인 가구 기준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0%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74%) -
- 생계급여 선정기준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1인 가구) -
'25년 195만 1,287원 → '26년 207만 8,316원(4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인상·각종 제도개선으로 2026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하였다.(4인 가구 기준)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 1인 가구 비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완화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인하(5%→2%)하여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 ~ 3.9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하였다.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1항)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화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어,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다.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 1인 가구 비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6년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7.20%,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비중 74.4%
 2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8%,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비중 15.6%

□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 7천 원 인상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5년 대비 선정기준 상향폭,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5.5만 원, 의료급여 6.9만 원, 주거급여 8.3만 원, 교육급여 8.6만 원

< 생계급여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7.20%)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6.51%)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관련 예시 >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76만 원을 받았다.

-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7.20%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82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 내년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준용

< 관련 예시 >

◎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인 30세 B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6만 원(76만 원 -70만 원)을 받고 있다.

-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6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28만 원(100만 원-72만 원)으로 감소,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82만 원-2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기준 개선(안) >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참고) 승용자동차는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중(2025년 1월부터)

< 관련 예시 >

◎ 소득평가액이 150만 원인 C씨 가구(4인 가구)는 자녀가 둘 있으며 7인용 승용차(카니발 2,151cc, 450만 원, 차량 10년 이상)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부합하지 못해(다자녀 가구가 아니며, 배기량 기준 미충족),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6년부터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 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150만 원+1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39만 원의 생계급여(208만 원-169만 원)가 지급된다.

③ (관리 체계 강화)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적정 수급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상 본인부담 기준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024년 7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적정한 급여 관리를 위하여 2025년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인부담 개편안 재검토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5년 의결사항) 외래 1차 4%, 2차 6%, 3차 8%, 약국 2% (1종 기준)

한편, 2026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신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550여 명 안팎의 수급자(상위 약 0.03%, 2024년 이용자 기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 주거급여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7만 원~3.9만 원(4.7~11.0%) 인상한다.

< 2026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기준	증가	기준	증가	기준	증가	기준	증가
1인	36.9	+1.7	30.0	+1.9	24.7	+1.9	21.2	+2.1
2인	41.4	+1.9	33.5	+2.1	27.5	+2.1	23.8	+2.3
3인	49.2	+2.2	40.1	+2.6	32.7	+2.5	28.3	+2.7
4인	57.1	+2.6	46.3	+3.0	38.1	+3.0	32.9	+3.2
5인	59.1	+2.7	47.9	+3.1	39.4	+3.1	34.0	+3.3
6인	69.9	+3.2	56.8	+3.7	46.3	+3.5	40.2	+3.9

* 괄호는 '25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교육급여 >

- 교육급여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단위 : 원/연)

구분		'25년	'26년	
		지원금액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초	487,000	502,000	+15,000 (+3.0%)
	중	679,000	699,000	+20,000 (+3.0%)
	고	768,000	860,000	+92,000 (+12.0%)
교과서비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 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그 기본이 되는 제도,” 라고 하면서,
 -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히 살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044-202-3051)
		담당자	사무관	이용채 (044-202-3066)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장	변성미 (044-202-3091)
		담당자	사무관	윤서영 (044-202-3094)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장	김도곤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김정택 (044-201-3358)
<교육급여>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책임자	과장	하진혜 (044-203-6134)
		담당자	사무관	이건혁 (044-203-6529)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및 국토교통부 · 교육부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차관
 - 위촉직(10인):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구 분		성 명	현소속 및 직위
당연직		정 은 경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이 상 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최 은 옥	교육부 차관
		임 기 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 민 재	행정안전부 차관
		권 창 준	고용노동부 차관
위촉직	전문가	석 재 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태 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신 현 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박 미 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공익	김 성 식	서울교육대학교 부총장
		송 인 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
		김 도 형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조 상 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김 수 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현 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25년)는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외 기준 폐지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예산) '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1.25조 원(국비 기준)

* 생계 8.5조원, 의료 8.7조원, 주거 3.0조원, 교육 0.2조원, 자활 0.8조원, 해산장제 0.5조원

- (개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 現 산정방식('21년~)

- (원칙)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

n년 기준 중위소득 = n-1년 기준 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 추가증가율은 6년간 ('21~'26) 한시 적용

- (기본증가율) 최근 3년(n-3~n-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 ※ 다만, 차년도(n년)나 당년도(n-1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 (추가증가율) ①기준 중위소득-가금복 간 격차 해소, ②개편된 가구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21~'26)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 적용
 - (통계원 변경) '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을 산출할 가구소득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20.7월, 제60차 중생보 결정)
 - (격차 해소)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18 기준 12.49%) 단계적 해소(6년간)
 - * $(n-3\text{년 가금복 중위소득} / n-3\text{년 기준 중위소득})^{1/6}$
 - (가구균등화 지수)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지수 0.37 → 0.4 / 2인 가구 0.63 → 0.65 등
 - ** 격차 해소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균등화 지수도 6년간 단계적 변경

붙임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총 80개, 2025년 기준)

연번	부처	사업명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교육부	(기초생활) 교육급여
6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이용권
1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1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3	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4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15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6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17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8	국토부	(기초생활) 주거급여
19		행복주택 공급
20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1	농림부	학교우유급식
22		농식품바우처
23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24		산림일자리(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25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26		통합문화이용권
27		스포츠강좌이용권
28	법무부	법률 구조 제도
29	복지부	(기초생활) 생계급여
30		해산장제급여
31		긴급복지
32		장애수당(기초)
33		장애수당(차상위)
34		장애아동수당
35		차상위계층 지원(차상위본인부담 경감)
36		(기초생활) 의료급여
37		장애인연금
38		재난적 의료비 지원
3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40		자활근로
4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2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연번	부처	사업명
43		발달재활서비스
44		언어발달지원
45		희망저축계좌(I,II), 청년내일저축계좌
46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4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9		치매 검진 지원
5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3		장애정도심사 검사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54		아동발달지원계좌
5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56		상병수당 시범사업
5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8		암환자 의료비 지원
5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0		장애인 의료비 지원
6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62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3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6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65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양육비,교육비)
6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7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 등 지원
68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69	여가부	위기청소년특별지원)
70		아이돌봄 서비스
7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72		온가족보듬사업
73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7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75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비)
7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77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78		에너지바우처
79	산자부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8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